

# 2024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773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 : 2023. 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2024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

## 2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: 90,000천원
  - 필 요 성 :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함.
  - 사업내용 : 기업경영 과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(창안개발, 제품생산, 판로개척 등)

## 3. 세부내용

### 출연현황

(단위 : 천원)

| 연번 | 출연대상               | 출연금액         |        |     | 증감사유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|----|
|    |                    | 2024년<br>본예산 | 기정액    | 증감액 |      |    |
| 1  | 경기도<br>경제과학<br>진흥원 | 90,000       | 90,000 | -   | 해당없음 |    |

### 출연대상

- 설립근거 :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
- 설립목적 :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

○ 기능 및 주요사업

-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기능
- 전자상거리·네트워크화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사업
- 계측시험인증·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
- 기술·경영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
- 자금·판로·수출지원등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
-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위탁사업 수행 등

□ 출연금액 : 90,000천원(2023년 90,000천원)

□ 출연근거

-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(재산의 출연 등) 제10조(기금 및 운용재원)

□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2023년 사업추진 중간보고에 따르면 산업재산권, 규격인증, 시제품 개발, 시험분석, 페이지 제작, 제품 패키지, 카탈로그 제작 등 창안 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32개사 54건(73,352천원을) 지원결정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검토의견

-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기업지원 사업으로 소비자의 구매동기에 제품의 디자인 비중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6조(사업)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[전문개정 2017.4.12.]

- 가. 전자상거래·네트워크화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지원
- 나. 산업·금융·경영·기술·무역정보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종합정보의 제공한다. 계측시험인증·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
- 라. 기술·경영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
- 마.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 및 연수
- 바. 창업가 발굴·육성·성장 등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
- 사. 자금·판로·수출지원등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
- 아.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
- 자. 벤처·창업 인프라 등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구축 및 운영
- 차.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.) 또는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
- 카. 해외투자사업지원 및 국내외 경제교류 협력사업

제9조(재산의 출연등) 도지사는 「지방재정법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·건물 및 자본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제10조(기금 및 운영재원)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1. 도와 시·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
- 2. 정부의 지원금
- 3. 금융기관 및 기업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
- 4.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

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·위탁사업수입금·자체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

**붙임****예산 및 신규사업 수요조사 서식****□ 예산 수요조사**

○ 제출서식 (작성예)

(단위: 천원)

| 시·군명 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| 합계      | 도비     | 시·군비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하남시  |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<br>맞춤형 지원 | 150,000 | 60,000 | 90,000 |

※ 재정분담율 : 도비 2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50%